

파워블로그 상품 추천글, 어쩐지 이상하다 했네

건당 3만~15만원 지급 광고글 의뢰 업체 20곳 적발

공정위 “소비자 속인 것”…해당 블로거도 제재해야

‘아쿠아차지(점안액) 넣어주니 눈이 편해지는 기본도 드네요’, ‘저도 헬로키티 에바항공 타고 대만여행 가고 싶어요’와 같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들이 대가없이 순수하게 올려져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블로그에 대가성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도록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온 2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광고 규모가 크지 않은 10개 사업자는 경고로 제재했지만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 중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에바항공에 대해서는 총 6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파워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 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글의 대략적인 내용과 방향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글에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에게 전달된 대가는 글 1건당 3만~15만원에 달했다.

블로거들도 이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경험에 의한 의견인 양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투의 글을 써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글은 사실상 광고인데도 일반인의 소개·추천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3개사를 제외한 사업자에게는 가구회사, 화장품회사, 온라인 쇼핑몰, 성형외과, 치과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들이 이 사건 광고에 적극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시켰다. 하지만 사업자와 광고대행사 간 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민법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해당 파워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포털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



일부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파워블로거에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오다 적발됐다.

이다. 포털 사업자는 자체 규약에 따라 파워블로거 자격을 철회하는 등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파워블로거의 블로

그는 일반인이 포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검색되는 혜택을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원산지표시 대폭 개정

크기 확대·복합 가능

국가명 표기도 인정

중국산 땅콩과 호주산 마카다미아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수입품에 대해 ‘Mixed in 싱가포르(땅콩 : 중국산, 마카다미아 : 호주산)’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중국산 또는 호주산으로 표시해야 했다.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커지고, ‘Country of Origin : 국가명’과 같은 원산지 표시도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대외 무역관리규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은 구매자가 원산지표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8포인트(2.8mm)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 표면 적별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규정했다. 포장 표면적 50cm²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cm² ~ 3000cm² 미만은 12포인트 이상, 3000cm²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이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수입자 및 제조자의 제도적응과 생산반영 기간을 고려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존의 ‘원산지 : 국가명’, ‘Made in 국가명’, ‘Product of 국가명’ 등 기존 원산지표시방법 외에 국제 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Country of Origin : 국가명’도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연합뉴스

미서명 신용카드 분실·도난 책임 절반 줄어든다

소비자 부담 100%→50%로

가족 대여 사고는 보상 안돼

오는 3월부터 미서명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소비자의 책임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부정 사용 금액을 전액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사례는 1만9197건으로 전년 동기(1만9497건) 대비 1.5% 줄었다. 같은

기간 분실·도난카드에 의한 부정사용금액은 57억9000만원으로 전년 동기(66억2000만원)보다 12.5% 감소했다.

금감원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보상을 위해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부담비율을 산정토록 했다.

우선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책임부담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입원, 출장 등으로 가족이 카드를 일시 보관하던 중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부담률은 평균 50%이었으나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본인의 카드를 가족에게 빌려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카드를 일시적으로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



우 미서명 등 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납편 카드로 소유했을 한 것처럼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했을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초 부정사용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했을 때 신고한 경우의 책임부담률은 평균 35%에서 20%로 낮아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인 93% “방사능 오염 식품 불안”

한국소비자원 인식 조사

일본전사고 한국에 영향

국내 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은 일본 원전사고 여파로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92.6%(556명)의 응답자가 ‘일본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방사능 오염이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어패류 등 수산물(52.9%)’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오염된 농수산물 및 식품수입(18.5%)’, ‘방사능 비, 대기에 의한 직접적 인체 노출(17.5%)’ 등을 우려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일본산 수

입 식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식품에서도 대해서도 드러났다.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일본산(93%)이 국내산(72.5%)보다 높았지만 둘 다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자들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환경 등의 방사능 오염정도와 안전성(40.5%)’, ‘방사능 물질이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21%)’, ‘원전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내용(15.5%)’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수산물가공품, 쌀 등 국내 유통식품 12개 품목 180종의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식품의 방사능 오염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우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몇 점?”

www.cjhellovision.com